

## 일본과 미국의 PL법 동향

### 일 PL법안 각의 결정

일본 정부는 4월 12일 경제기획성, 통산성, 법무성 등 9개 성청이 공동으로 작성한 PL법(제조물책임법)의 안건을 각의 결정하였다. 국회에서 심의 가결되면 주지(周知) 기간을 1년으로 하여 내년 여름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PL법안은 국민생활 심의회에서 오랫동안 심의가 계속되어 왔다. 1992년 10월에 열린 제 13차 국민생활 심의회의 중간 보고에서 PL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강한 반대로 결론을 1년 뒤로 미루고 관계 성청에서 소관 제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요청에 따라 농림수산성은 '식품에 관계되는 소비자 피해방지·구체대책연구회'에서 소관 제품을 검토하고, 후생성은 '중앙약사심의회', 통상산업성은 '산업구조심의회' 등에서, 또 다른 성과 자치체도 각각 검토를 진행하였다.

산업계의 반대는 여전히 강하여 작년에도 연기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작년 8월경부터 급히 풍향이 변하여 PL법은 세계적인 조류로서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아마도 이것은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은 물론 옛 사회주의권의 헝가리, 태평양권에서는 필리핀, 오세아니아, 그리고 중국에서 입법화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여겨진다.

PL법의 목적은 제품의 결함이 원

인이 되어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를 받은 소비자를 구제하고, 그 결함제품을 유통 과정 중에 둔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대책에 만전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함이다.

총전의 민법 570조에서는 제품에 보통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 성능, 혹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보증한 성질을 빼놓은 듯한 하자가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에서 이미 존재하여 사는 사람이 일반적인 결의를 하더라도 발견할 수 없었을 경우,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이(무과실책임) 하자담보 책임으로 처리되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산적,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확대 손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은 적용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에 대해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특정하여 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하여야 했다.

소비자가 소매점에서 제품을 구입하므로 메이커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없으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메이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민법 709조의 불법 행위로 메이커의 책임을 판정하고 추구해 왔다. 이런 경우에는 고의이든 부주의(과실)이든 동일 범죄이고,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결함 상품을 제조·판매하여(행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손해'를 발생시켜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가

배상된다. 즉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번에 각의에서 통과된 제조물책임법안문은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직접 계약이 없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을 메이커에 부담시키는 것이 골자이다. 민법에서 말하는 과실책임의 원칙은 적용하지 않고 제조물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여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손해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미국의 소송 쇄도와 고액의 손해배상을 보고 입법에 반대하는 산업계의 여론에 따라 각 단체에서 강하게 요구되었던 추정 규정의 도입이 보류되고, 업계에서 제기한 개발 위험의 항변이 인정되었다.

추정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실시한 입법화에서 소비자의 입장 사항이 적어졌다고 말하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상당한 수고를 필요로 하므로 적성(適性) 사용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발생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제품에는 결함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유통에 둔 시점에서 그 과학 지식과 기술 수준에서는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는 위험이다. 특히 의약품 등의 부작용이 문제가 된다. 그 시점에서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경우 항변하면 책임이 회피된다. 기본적으로 이번의 입법안은 미국보다는

EC 지령에 가깝다. 그만큼 완화되어 있다.

## 식품과 PL법

식품에 관련한 사고에서는 집단 소송이 많다. 식중독에서 증거가 되는 식품은 이미 배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결함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국립보건원이나 각 시도에 있는 보건소에서 사고가 난 직후에 역학 조사를 하거나 음식점에 대한 지도가 중요하다. 식품은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식사할 기회가 많아 경시 변화가 큰 것으로, 특히 생선회 등 생선 어패류는 판매 혹은 조리한 직후에는 세균 수가 적더라도 보관 온도나 시간에 따라서는 세균이 증식하여 위험한 수준에 이른다. 또 소비자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나타나는 법이 달라진다. 공업 제품과는 달리 특성을 조절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 경우에는 추정할만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비자는 결함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 각 시험기관의 협력과 재판관의 개연성에 근거를 두어 적극적으로 추정해 나갈 것을 권장한다. 미국에서는 배심원이 결함에 관한 감각을 51% 이상 가지면 그 배심원은 결함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재판관이 인정할 때 적어도 개연성을 90% 이상 갖지 못하면 결함이라는 판정을 내리지 못한다.

식품위생법을 비롯하여 식품은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만드는 식품 사업자는 책임을 중대하게 느껴 안전 확보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인다. 더구나 식품위생법을 비롯하여 많은 규제가 있고, 식품에서 유래되는 확

대 손해나 중독성 질환 등과 같이 누적된 독에 대한 손해는 현행법에서도 예전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 피해를 받은 소비자는 구제되고 있으므로 PL법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르다. 중독증 질환의 경우도 피해자가 많아 사회 문제로 되어 공공기관의 연구소도 아울러 원인과 인과 관계를 규명하는 데 합세하고, 시간과 돈을 들여 얻어낸 결과에서 결함을 증명하여 구제된다. 결과가 동일하다고 해서 PL법이 필요없다는 근거는 아니다.

최근에 있었던 미국의 PL 소송에서는 보증책임(표시)을 추구하는 것이 많다. 차라리 그 편이 입증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특히 포장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라도 표시나 구조 기능의 결함을 지적하기 쉬우므로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 미국의 PL법

미국의 PL법은 주(州)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연방안에 의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연방 PL공정법의 입안을 제안하고 있다. 1990년에 101회 미국연방의회 '상원 상업 등 위원회'의 공청회가 열려 증언에 선 상무성 월키 상무심의관은 '현재 미국의 PL제도는 기업에 높은 비용 부담을 부과하고(PL 대체 비용), 국제 경쟁력을 제한하여 공장 폐쇄를 초래하고(세스나 항공기, 헬멧 메이커 등), 노동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고, 제품 가격을 상승시켜 사회적으로 유익한 개발 제품의 공급을 불능으로 만들고(에이즈 약수 등), 일어난 상해에 대해서는 막대한 법무상의 처리 비용을 필요로 하므로 미국 PL

제도의 결함은 명백하다'라고 증언하였다. 이 공청회는 당시 부시 대통령 차대에 PL 제도를 제한하는 법안을 심의하는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산업의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걱정하여 부통령을 장으로 하는 Working group을 만들었으나, 대통령 선거에 패하여 록펠러 의원에게 이양되었다.

지난해 11월 9일에 개최된 103회 의회 상원 상업 등 위원회에서 PL 개정법은 16:4의 압도적인 다수로 가결되었다. 금년에 상원 가결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금까지 몇 차례 부결되었다. 동 법안이 하원에서도 심의되나 금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의 선거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PACKPIA』, 1994·7, (株)日報